## 제225회 정례회 김기남 의원 회피 허가의 건

의 안 번 호 제 3251호

제출년월일 2023. 6. 5. 제 출 자 도시환경위원장

## 1. 제안이유

「2023년도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」 및 「2022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」과 관련하여 감사위원의 자발적인 회피의사에 따라 해당 위원의 2023년도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및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피 허가 여부를 의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미래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피 나. 스마트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피 다. 김포도시관리공사 소관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·예비비 지출 승인안 회피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

-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(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·기피 신청)
- 지방자치법 제82조(의장이나 의원의 제척)
-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(제척과 회피)
-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(제척과 회피) 나. 회피 신청서 : 붙임 참조